

2018년도 제4회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11월 23일

전남대학교총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지원코드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근무예정부서 (지역)	선발예정 인원
공업(일반기계)A	공업(일반기계)	공업(일반기계)9급	사무국 시설과 (광주광역시)	1명
공업(일반기계)B	공업(일반기계)	공업(일반기계)9급	사무국 시설과 (광주광역시)	1명
공업(일반기계)C	공업(일반기계)	공업(일반기계)9급	사무국 시설과 (광주광역시)	1명
시설(건축)	시설(건축)	시설(건축)9급	사무국 시설과 (광주광역시)	1명
해양수산(선박기관)	해양수산(선박기관)	해양수산(선박기관)9급	수산해양대학 (전남 여수시)	1명
해양수산(선박항해)A	해양수산(선박항해)	해양수산(선박항해)9급	수산해양대학 (전남 여수시)	1명
해양수산(선박항해)B	해양수산(선박항해)	해양수산(선박항해)9급	수산해양대학 (전남 여수시)	1명
운전	운전	운전9급	행정본부 행정지원과 (전남 여수시)	1명

2. 담당예정 업무

[붙임]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참고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4. 응시 자격

가. 기본 응시요건(응시자격 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18세 이상인 자(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단,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나. 직무관련 자격요건: [붙임]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참고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동점자는 추가 합격)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 직무수행계획
- 우대 요건: [붙임]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참고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대면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한 질의응답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6. 시험일정

구 분	추진일정(예정)	비고
· 채용공고	'18. 11. 23.(금) ~ 12. 3.(월)	·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injae.go.kr), 대학 홈페이지
· 서류접수	'18. 11. 29.(목) ~ 12. 3.(월)	· 총무과(광주캠퍼스)
· 1차시험 합격자 발표	'18. 12. 18.(화)	· 대학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 2차시험(면접시험)	'18. 12. 26.(수) 또는 12. 27.(목)	· 광주캠퍼스
· 2차시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19. 1. 15.(화)	· 대학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 임용예정	'19. 1월 중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접수기간: 2018. 11. 29.(목) ~ 12. 3.(월) 09:00 ~ 18:00
- 접수장소: 전남대학교 2층 총무과
- 응시원서: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사용
-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접수
 -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 등기우편 접수시 겹봉투에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반드시 표기
 -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용봉동)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2층 총무과 공무원채용 담당
 - ※ 등기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개인별 e-mail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면접당일 배부(e-mail 확인 후 응시번호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유선으로 확인)

8. 기타사항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지원코드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며,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 응시자격이 정지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와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를 기재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총무과(☎ 062-530-11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